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 분리 규정〉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892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정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6. 17.
3. 회 부 일: 2025. 6.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과실·중과실도 치상·치사 결과에 따라 구분해 처벌하고, 그 처벌 수위도 상향해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는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량 또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중대한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중과실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나치게 낮은 법정형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업무상과실·중과실도 일반 과실죄처럼 치상과 치사를 구분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상죄의 경우, 벌금 상한은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치사죄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268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현행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죄와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상죄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죄의 경우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임(안 제268조).

현행	개정안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u>사망이나 상해</u> 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① ----- ----- <u>상해</u> ----- ----- ----- <u>3천만원</u> ----- -----. ② <u>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2. 현행법의 내용

과실치사상의 죄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과실’은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로 정의됨.¹⁾

과실치상죄는 과실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과실치사죄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며, 현행 「형법」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는 i) 과실치상죄(제266조), ii) 과실치사죄(제267조) iii)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제268조)로 구성되어 있음.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규정체계]

구분	근거규정	처벌대상	법정형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u>과실</u> 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u>상해</u> 에 이르게 한 자 (반의사불벌죄)	<u>500만원</u>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과실치사	형법 제267조	<u>과실</u> 로 인하여 사람을 <u>사망</u> 에 이르게 한 자	<u>2년</u> 이하 금고 또는 <u>700만원</u> 이하 벌금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형법 제268조	<u>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u> 로 인하여 사람을 <u>상해</u> 에 이르게 한 자 <u>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u> 로 인하여 사람을 <u>사망</u> 에 이르게 한 자	<u>5년</u> 이하 금고 또는 <u>2천만원</u> 이하 벌금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론적으

1)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注意)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로는 단순 과실치상·과실치사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나, 실무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형법 각칙 제26장에 규정된 과실범의 핵심을 이룸.

[최근 3년간 과실범죄 발생·검거 건수]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발생건수	검거건수
과실치상	2,663	2,280	2,914	2,596	3,048	2,799
과실치사	19	17	32	30	30	30
업무상 과실치상	2,513	2,331	2,973	2,882	3,143	2,995
업무상 과실치사	1,103	1,022	1,188	1,169	1,191	1,124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23~2025

업무상 과실은 해당 업무의 종류나 성질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²⁾

중과실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큰 경우로서, 행위자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예견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 결과발생에 이르게 한 행위³⁾를 의미함.⁴⁾

2)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163 판결]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도538 판결

3. 개정안의 검토

현행 「형법」의 과실치상·과실치사죄는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와 사망에 이른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 법정형의 차이를 보이는데,⁵⁾⁶⁾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한 법정형(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내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는 현행 과실치사상 범죄의 형벌 가중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점,⁷⁾ ‘생명’은 한 번 침해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반면, ‘신체’의 침해(상해)는 치료를 통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익침해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인하여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사회적 사고 등에서도 현행법의 법정형 상한이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⁸⁾

4) 노태악 편집대표, “형법 각칙 제4권(제6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24. 7., p.322, pp.333.-334., p.448.

5)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특별법상 상해와 사망의 결과를 구분하여 법정형을 달리 규정한 예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등치사상죄 등이 있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 오영근, “형법각칙상 징역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12. 15., p.158.

또한, 최근 5년간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접수 및 기소 현황을 살펴 보면, 과실치상의 경우 처분인원 대비 구공판인원이 28~29% 정도로 유지되고 있으나, 과실치사의 경우 75%~92%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바, 각 범죄 사건의 발생 및 처리에 있어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죄와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죄를 분리하여 상이한 형량을 적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접수 및 기소 현황]

(단위: 명)

구분		사건접수 (신수)	처분			
			합계	구공판		구약식
				구속	불구속	
업무상 과실치상	2021년	3,536	1,018	0	289	729
	2022년	3,861	1,131	0	337	794
	2023년	4,656	1,445	0	413	1,032
	2024년	4,649	1,485	0	471	1,014
	2025년	4,782	1,281	0	383	898
업무상 과실치사	2021년	2,439	1,365	18	996	351
	2022년	2,269	989	6	797	186
	2023년	2,738	921	17	835	69
	2024년	4,023	923	14	815	94
	2025년	3,852	681	18	596	67

자료 : 법무부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8) 이경미, 2014. 5. 13., “[단독] “대형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법정 형량 강화 추진”,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36709.html, 최종검색일: 2026. 1. 21.; 김해술, 2022. 3. 16., “사람이 죽었는데 ‘벌금’… 너무 가벼운 업무상과실치사 처벌”,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203161817293539>, 최종검색일: 2026. 1. 21.

(1) 먼저, 형벌 체계의 정합성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현행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C)”인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분리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죄의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C-1)”으로,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죄의 경우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C-2)”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단순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과실치사, B)와 업무상 과실·중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C-1)를 비교하면, 법정형 상한은 금고형의 경우 2.5배, 벌금형의 경우 약 4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게 됨.

[현행과 개정안의 법정형 비교]

구분	근거규정	법정형	
		현행	개정안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A) <u>500만원</u> 이하 벌금, 구류, 과료	—
과실치사	형법 제267조	(B) <u>2년</u> 이하 금고 또는 <u>700만원</u> 이하 벌금	—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형법 제268조	(C) <u>5년</u> 이하 금고 또는 <u>2천만원</u> 이하 벌금	(C-1) <u>5년</u> 이하 금고 또는 <u>3천만원</u> 이하 벌금
			(C-2) <u>7년</u> 이하의 금고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

또한, 단순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A)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데 반해 업무상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C-1) “5년 이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업무상 과실 여부에 따른 형량의 차이 또한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음.

업무상 과실·중과실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단순과실치상죄·단순과실치사죄와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법정형과 관련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양형기준도 단순 과실치사와 비교하여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의 양형기준이 동일하거나 심지어 더 낮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과실치사상 범죄의 양형기준9)]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또한, 2011년 법무부 형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¹⁰⁾의 개정시안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를 분리하고, 업무상과실·중

9) 양형위원회,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10) 2007년 6월 법무부는 법무부장관 자문기구로서 학계 13명(위원장 포함),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등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상)를 확대·개편하여 형법 전면개정작업을 진행하였고, 2011년 형법총칙 관련 개정시안을 발표·제출하였으나,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음.

과실치상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을 하향하되, 단순과실치상죄 및 과실치사죄의 형량을 상향하여 과실범죄의 법정형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2011년 형법개정특위의 과실범죄 법정형 개정시안¹¹⁾]

구분	근거규정	법정형	
		현행	개정시안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u>500만원</u> 이하 벌금, 구류, 과료	<u>1천만원</u> 이하 벌금, 구류
과실치사	형법 제267조	<u>2년</u> 이하 금고 또는 <u>700만원</u> 이하 벌금	<u>3년</u> 이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 벌금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형법 제268조	<u>5년</u> 이하 금고 또는 <u>2천만원</u> 이하 벌금	<u>3년</u> 이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 벌금
			<u>5년</u> 이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 벌금

(2)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개별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의 법정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률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은 개별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각 개별법률은 과실범죄의 형종·형량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음.¹²⁾

11) 오영근, “형법각칙 법정형의 합리적 조정방안”, 대검찰청 연구용역보고서, 2011.12.

12)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벌칙) ① 건설사업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그 착공 후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특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이라는 형사처벌의 특례를 정한 법으로서, 도로교통사고에 관한 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특별법의 관계에 있음.¹³⁾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교통사고(운전 중 과실치사상)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¹⁴⁾에 따라 처벌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93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보호법」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4.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6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5.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3) 노태약 편집대표, 전게서, p.461.

1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 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1항은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별도로 규정함.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죄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죄를 구분하여 형량을 다르게 규정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며, 그밖에 과실범죄를 규정한 개별법률의 형량 정비 필요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3) 정리하면, 개정안은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죄와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죄를 분리하여 책임 및 결과의 경중에 상응하는 형량을 적용하려는 입법취지가 인정되나,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는 현행 과실치사죄와의 형벌 체계상 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 개별법상 특례규정 추가 정비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02-6788-5053

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 12. (생략)